

회 칩

재불 한국 과학기술자 협회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명칭

제 1항 본 협회는 프랑스 협회법 (Loi du 1ère juillet 1901) 에 의거하여 등록된 단체이다.

제 2항 본 협회의 명칭은 재불한국과학기술자협회 (在佛韓國科學技術者協會, Association des Scientifiques Coréens en France, 약칭재불과협, 在佛科協, ASCoF), 이하 협회라 칭한다.

제 2 조 목적

제 1 항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학술교류를 증대한다.

제 2 항 한국 과학기술계와의 유대를 강화한다.

제 3 항 한불 양국간의 과학기술 교류에 기여한다.

제 3 조 소재지

제 1 항 본 협회의 협회법상 등록소재지는 파리(Paris)에 둔다.

제 4 조 사업연도

제 1 항 본 협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.

제 2 장 회 원

제 5 조 구분 및 자격

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으로 구분된다.

정회원은 입회절차를 통해 가입했으며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일반회원과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.

제 1 항 정회원 -일반회원

(가) 학사 (전문대포함)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자로, 프랑스와 붙어권 주변국가에 거주하며,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자.

(나) 프랑스와 붙어권 주변국가에 거주하며, 과학기술 분야 기능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3 년 이상인 자.

제 2 항 정회원 -학생회원

프랑스와 붙어권 주변국가에 거주하며 대학 (전문대포함)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.

제 3 항 명예회원

과학기술 발전에 공적이 큰 사람 또는 본 협회에 지대한 기여를 한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 받은 자.

제 4 항 특별회원

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 받은 기업 또는 기관.

제 6 조 입회 및 탈퇴

제 1 항 입회는 입회원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으로 성립한다.

제 2 항 탈퇴는 본인이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서명으로 제출하거나 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성립된다.

제 7 조 권리와 의무

제 1 항 회원은 본 협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제 2 항 정회원은 본 협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특히,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개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
제 3 항 회원은 본 협회의 회칙 및 결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4 항 회원은 본 회칙 17 조에 명시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8 조 징계 및 제명

제 1 항 본 협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통하여 심의한 후, 회장의 동의를 거쳐 징계 및 제명을 결정하고, 회장은 결정 결과를 해당 회원과 본 협회 감사에게 이를 통보한다.

제 2 항 징계 및 제명에 대한 결정은 총회시 감사가 감사 결과를 회원들에게 보고한다.

제 3 장 조 직

제 9 조 기구

제 1 항 본 협회는 ㉠집행부 ㉡지역회 ㉢전문분과 ㉣감사 ㉤특별위원회의 기구를 둔다.

제 10 조 집행부

제 1 항 집행부는 본 협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.

제 2 항 구성

집행부는 회장, 1인 또는 2인의 부회장, 총무이사, 재무이사, 홍보이사, 편집이사, 전산이사로 구성되며, 이사들은 필요에 따라 증원 또는 감원할 수 있다.

제 3 항 회장 및 부회장 후보 자격

회장 및 부회장 후보는 본 협회 정회원으로, 프랑스에서 과학기술 분야에

직업을 갖고 종사하며, 후보 등록 당시로부터 4년 이상 연속 활동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.

제 4 항 회장 및 부회장 후보 등록 절차

회장 및 부회장 후보 등록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시행세칙으로 규정한다.

제 5 항 회장 및 부회장 선출

- (가) 당해년도 부회장이 회장 후보가 된다. 당해년도의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다른 부회장과 같이 회장 후보가 된다.
- (나) 회장은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된다. 단, 회장 후보가 일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인준한다.
- (다) 당해년도 회장 후보 등록자가 없거나,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, 운영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하며, 추천된 후보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(라) 부회장은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된다.

제 6 항 회장 및 부회장 임기

- (가)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(나) 부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.

제 7 항 회장 및 부회장 임무

- (가)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, 총회,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소집, 주재한다.
- (나) 회장은 집행부 운영을 통해 총회 의결 사항, 협회의 모든 사업 및 대내외 활동을 총괄 책임하여 집행하며, 그 집행 내역을 회원에게 수시로 알린다.
- (다) 회장은 지역회 및 전문분과의 구성을 결정한다.
- (라) 부회장은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에 참가하고, 차기 회장 선거에서 회장에 입후보한다.
- (마)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하며, 차기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.

제 8 항 이사의 임기 및 임무

- (가) 이사들은 회장이 임명,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에게 통보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해당 사업연도와 동일하다.
- (나) 이사들의 임무는 집행부 회의에서 결정한다.

제 11 조 지역회

- 제 1 항 지역회의 구성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결정한다.
- 제 2 항 지역회는 본 회칙 2조에 부합하는 사업수행에 협조한다.
- 제 3 항 지역회 대표는 각 지역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
- 제 4 항 기타 지역회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규정한다.

제 12 조 전문 분과

- 제 1 항 전문분과의 구성은 공통성이 있는 분야를 규합하여 회장이 결정한다.
- 제 2 항 전문분과는 본 회칙 2 조에 부합하는 사업수행에 협조한다.
- 제 3 항 전문분과장은 각 전문분과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
- 제 4 항 기타전문분과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규정한다.

제 13 조 감사

- 제 1 항 본 협회는 1 명의 감사를 둔다.
- 제 2 항 감사는 총회에서 최다수 득표로 선출되며, 감사 후보는 본 협회에서 정회원으로 2 년 이상 활동한 자이다.
- 제 3 항 감사의 임기는 1 년으로, 해당 사업연도와 동일하다.
- 제 4 항 감사는 해당 사업연도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 회 감사를 실시하고,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.
- 제 5 항 감사는 필요시 회장에게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 14 조 특별위원회

- 제 1 항 본 협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회장은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- 제 2 항 기타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 구성시 결정한다.

제 4 장 총회 및 운영위원회

제 15 조 총회

- 제 1 항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심의 의결 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.
- 제 2 항 정기총회는 매년 1 회 회장의 명의로, 개최 30 일전 공고를 통해 소집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.
 - (가) 회칙의 수정 및 변경
 - (나) 회장, 부회장 및 감사 선출
 - (다) 특별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 및 인준
 - (라) 차기 사업연도의 예산에 대한 심의 및 인준
 - (마) 총회년도 사업결산 및 예산결산
- 제 3 항 임시총회는 정회원 15 명 이상의 서명 발의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 하였을때, 회장의 명의로 소집되며, 소집공고에 명시된 안건을 심의, 의결 한다.

제 16 조 운영위원회

- 제 1 항 운영위원회는 상임, 심의, 의결 기관이다.

- 제 2 항 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지역회대표, 전문분과장,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.
- 제 3 항 운영위원회는 매 사업년도 1 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.
- 제 4 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.
- (가) 협회운영, 사업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의결.
 - (나) 시행세칙의 제정 및 수정.
 - (다) 회원관리 및 명예회원, 특별회원 추천.
 - (라) 연회비 결정.
 - (마) 차기 회장 선출시 입후보자가 없거나, 차기 회장 당선자가 없을 시, 차기 회장 후보자를 추천.

제 5 장 재 정

제 17 조 재정

- 제 1 항 본 협회의 재정은 연회비, 찬조금, 보조금, 사업 수익금,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제 2 항 정회원의 연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,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찬조금으로 대신한다.
- 제 3 항 회계연도는 사업연도와 동일하다.

제 6 장 회칙 개정, 시행세칙 결정 및 협회의 해체

제 18 조 회칙 개정 및 시행세칙 결정

- 제 1 항 회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, 회칙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한다.
특별위원회에서 회칙개정안을 논의, 확정하고, 총회 개최 30 일전에 모든 정회원에게 공표,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.
- 제 2 항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고, 회장은 제정 또는 수정된 시행세칙을 30 일 이내에 모든 회원들에게 공표한다.

제 19 조 협회의 해산

- 제 1 항 본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결정한다.
- 제 2 항 해산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정회원의 과반수 이어야 하며, 참가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제 3 항 해산시 본 협회의 자산은 프랑스협회법 9 항 (Article 9 de la loi 1901) 에의거,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

제 1 조

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

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식적인 일반 관례에 따라 시행한다.

“1976년 제정, 1978년 6월 개정, 1980년 10월 개정, 1984년 4월 개정, 1987년 3월 개정,
1991년 11월 개정, 2003년 10월 개정”